

제10장 투자

제10.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 가. **적용대상투자**란 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 설립, 인수 또는 확장되고, 적용 가능한 경우, 투자유치 당사자에 의하여 관련 법, 규정 및 정책¹에 따라 허용된^{2,3}, 그 당사자 영역에서의 다른 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 나.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 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법인에 대한 지분 참여(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¹ 이 정의의 목적상, “정책”이란 당사자 정부에 의하여 서면 형식으로 승인 및 발표되고, 서면 형식으로 공개되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정책을 말한다.

²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 이 장에 따른 보호는 이들 각자의 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이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 보호를 위하여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승인된 적용대상투자에 부여된다.

³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의 경우, “허용된”이란 “각 경우에 맞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등록되거나 승인된” 것을 말한다.

- 2) 채권, 회사채, 대부⁴ 및 법인의 그 밖의 채무증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⁵
- 3)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
- 4) 투자유치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권
- 5) 사업과 관련되고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금전청구권 또는 어떠한 계약 이행청구권⁶
- 6)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양허, 면허, 인가 및 허가와 같이 투자유치 당사자의 법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그리고
- 7)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유치권 또는 질권과 같은 그 밖의 재산권⁷

“투자” 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 또는 중재 절차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다.

⁴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발행한 대출은 투자가 아니다.

⁵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즉각적인 지급만기의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의 결과인 지급청구권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란 오직 다음으로부터만 발생하는 금전청구권은 의미하지 않는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상업적 계약, 또는

나. 그러한 상업적 계약과 관련된 신용의 공여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이 호의 투자의 정의 목적상, 투자된 수익은 투자로 취급되고 투자되거나 재 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비당사자의 투자자**란 당사자에 대하여, 그 당사자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⁸,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한쪽 당사자의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마. **당사자의 투자자**란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⁹,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당사자의 법인을 말한다.

바.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 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와 법인의 지점을 말한다.^{10, 11 12}

사. **당사자의 법인**이란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법인과 그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13,}

14, 15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행위들을 한 경우, 당사자들은 그 투자자가 투자 "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투자 "하려고 시도"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통보 또는 승인 절차를 개시한 투자자를 지칭한다.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행위들을 한 경우, 당사자들은 그 투자자가 투자 "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투자 "하려고 시도"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통보 또는 승인 절차를 개시한 투자자를 지칭한다.

¹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지점은 이 협정상 어떠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¹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정의에 "지점"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신의 법에 따라 지점을 독립적인 법적 존재가 없고 개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실체로서 취급하는 당사자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¹² 비당사자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자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¹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지점은 이 협정상 어떠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¹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법인"의 정의에 "지점"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신의 법에 따라 지점을 독립적인 법적 존재가 없고 개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실체로서 취급하는 당사자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아. 당사자에 의한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 1) 그 당사자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2) 그 당사자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자. 당사자의 자연인이란, 마호의 목적상,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다음의 자연인을 말한다.

- 1) 그 당사자의 국민 또는 시민, 또는
- 2) 그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가 모두 영주권자를 인정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국민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그들 각자의 영주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자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제10.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 그리고

나. 적용대상투자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¹⁵ 비당사자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자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다. 당사자의 관련 기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이 장의 목적상,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서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라. 제8장(서비스 무역)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마.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구속하지 않는다.

3 제2항라호에도 불구하고, 제10.5조(투자의 대우),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¹⁶, 제10.9조(송금), 제10.11조(손실에 대한 보상), 제10.12조(대위변제) 및 제10.13조(수용)는, 제8장(서비스 무역)의 의미에서 그 밖의 당사자의 영역에서 한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그러나 그러한 모든 조치가 이 장에 따른 적용대상투자 및 의무와 관련이 있는 한도에서만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0.3조

¹⁶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내국민 대우¹⁷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여하는 대우란, 중앙정부를 제외한 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자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제10.4조

최혜국 대우^{18, 19}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그 밖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자는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신의 영역 내 그 밖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대우는 그 밖의 기존의 또는 미래의 국제 협정에 따른 국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는다.

¹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대우가 부여되는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투자자들 간 또는 투자들 간의 구별을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상황에 달려있다.

¹⁸ 이 조는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에 따른 대우는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들의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되지 않는다.

¹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에서 대우가 부여되는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투자자들 간 또는 투자들 간의 구별을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상황에 달려있다.

제10.5조
투자의 대우²⁰

1. 각 당사자는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각 당사자가 모든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 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각 당사자가 적용대상투자의 물리적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 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가 적용대상투자자에 부여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제10.6조
이행요건 금지

1. 어떠한 당사자도 그 밖의 당사자 투자자의 그 당사자의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한 조건으로,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

²⁰ 이 조는 부속서 10-가(국제관습법)에 따라 해석된다.

는 강요하지 않는다.²¹

-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을 수출할 것
- 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 다.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관련시킬 것
-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 바. 그 당사자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그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또는
- 아. 그 요건이 부과되거나 강요되는 때 존재하는 모든 면허 계약, 또는 그 투자자와 그 당사자의 영역 내 인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되는 모든 미래의 면허 계약에 관해서, 면허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의 로열티를 채택할 것. 다만, 그 요건은 당사자의 비사법적 정부 권한의 행사에 의하여 면허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거나 강요되어야 한다.²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그 면허 계약이 그 투자자와 당사자 간 체결되

²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자신의 유보목록의 목록-가 및 목록-나에 규정된 대로, 이 조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²² 이 호의 목적상, "면허 계약"이란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의 면허에 관한 모든 계약을 말한다.

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에도 불구하고, 바호 및 아호는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및 미얀마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자도 그 밖의 당사자 투자자의 그 당사자의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대하여 다음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나.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관련시킬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3. 가.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그 밖의 당사자 투자자의 그 당사자의 영역 내 투자와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훈련 또는 고용, 특정한 시설의 건설 또는 확장, 또는 연구 및 개발의 수행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요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나. 제1항바호 및 아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²³ 제3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2) 당사자의 경쟁법과 규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재판소 또는 경쟁 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강제되는 경우

다. 당사자의 저작권법과 규정에 따라 공평한 보상으로서 재판소 또는 경쟁 당국에 의하여 요건이 부과되거나 강제되는 경우 제1항아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제1항가호부터 다호까지, 제2항가호 및 제2항나호는 수출진흥 및 외국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상품의 자격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마.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관세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자가 부과하는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어떠한 요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10.7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자도 적용대상투자인 그 당사자의 법인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 당사자는 적용대상투자인 그 당사자의 법인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그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²³ 이는 2001년 11월 14일 도하에서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전에 관한 도하 선언」(WT/MIN(01)/DEC/2) 제6항을 이행하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포함한다.

제10.8조
유보 및 비합치 조치

1.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자가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자신의 유보목록의 목록-가에 그 당사자가 규정한 대로, 중앙정부
- 2)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자신의 유보목록의 목록-가에 그 당사자가 규정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그리고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하여 다음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 1)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조치, 그리고
- 2)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

2.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당사자가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

치 조치 목록)의 자신의 유보목록 목록-나에 규정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항다호2목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 동안,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제1항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어떠한 당사자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자신의 유보목록의 목록-나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관계 당국의 최초 승인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5. 제10.3조(내국민 대우) 및 제10.4조(최혜국 대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5조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치 그리고 제11.7조(내국민 대우)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대한 예외 또는 이탈의 적용대상이 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10.9조

송금

1. 각 당사자는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신의 영역 내외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최초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나.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지불, 기술지원과 기술 및 관리 수수료, 권리사용료 및 적용대상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경상소득

다.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청산에 따른 대금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0.11조(손실에 대한 보상) 및 제10.13조(수용)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바. 판결, 중재 또는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한 지불, 그리고

사. 적용대상투자자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관여한 사람의 소득 및 그 밖의 보수

2. 각 당사자는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그러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어떠한 자유사용가능통화로도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자신의 법과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피고용인을 포함한 채권자의 권리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및 범죄 수익금 환수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판정이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바. 과세²⁴

²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또한 거주지 또는 설립지에 기반하여 인들을 구별하는 과세조치를 포함하여,

사. 사회보장, 공적퇴직연금, 퇴직기금, 강제 저축 제도 또는 연금이나 유사한 퇴직 수당을 제공하기 위한 그 밖의 약정

아. 피고용인의 퇴직금, 그리고

자. 그 당사자의 중앙은행 및 그 밖의 관련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형식을 등록하고 충족하기 위한 요건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과 합치되는 외환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에 따른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 당사자는 제17.15조(국제수지 보호조치)나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하여도 그러한 거래에 관한 이 장에 따른 의무와 불합치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0.10조

특별형식 및 정보의 공개

1. 제10.3조(내국민 대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당사자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10.3조(내국민 대우) 및 제10.4조(최혜국 대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가 그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에서,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제공된 모든 비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을 포함한다.

밀 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자신의 법과 규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11조 손실에 대한 보상

각 당사자는 무력충돌, 내란 또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자신의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신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자신이 동종의 상황에서 다음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가. 자신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나. 그 밖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제10.12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자나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적용대상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형태의 보장에 따라 그 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적용대상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적용대상투자에 관련된 모든 권리 또는 청구의 대위 또는 이전을 인정한다. 대위되거나 이전되는 권리 또는 청구는 그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보다 크지 않다.

2. 한쪽 당사자나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그 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승인 받지 않는 한, 적용대상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추구하지 않는다.

3. 대위되거나 이전되는 권리 또는 청구의 행사에 있어,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행사하는 한쪽 당사자나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은 그 투자자와의 청구약정 적용범위를 관련 당사자에 공개한다.

제10.13조

수용²⁵

1. 어떠한 당사자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수용하거나 국유화(이하 이 장에서 “수용”이라 한다)하지 않는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를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된다.²⁶

나.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을 때²⁷ 또는 수용이 발생했을 때 중 더 빠른 시점(이하 이 장에서 “수용일”이라 한다)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

²⁵ 이 조는 부속서 10-나(수용)에 따라 해석된다.

²⁶ 당사자들은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기 전에 준수될 필요가 있는 법적 및 행정적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

²⁷ 필리핀의 경우,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때는 수용에 대한 신청의 제출일을 지칭한다.

과 동등하다.^{28,29,30}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지연이 있는 경우, 보상은 수용 당사자의 법, 규정 및 정책에 따른 적절한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법, 규정 및 정책은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

4. 이 조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그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1장(지식재산)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³¹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토지 관련 모든 수용 조치는 수용 당사자의 기존의 법과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고, 보상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보상의 지불에 대하여 상기 법과 규정에 따른다. 그러한 보상은 보상액 관련 상기 법과 규정의 후속적 개정이 토지 시장가격의 일반적 경향을 따르는 경우 그러한 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10.14조

혜택의 부인³²

²⁸ 호주, 브루나이다루살람,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용일이란 수용이 발생하기 직전의 날을 말한다.

²⁹ 캄보디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용일이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수용 결정이 내려지는 날을 말한다.

³⁰ 태국의 경우,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용일이란 수용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³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조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의 "취소"가 그러한 권리의 취소 또는 무효화를 포함하고 지식재산권의 "제한"이 그러한 권리에 대한 예외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³² 이 조에 규정된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당사자의 권리는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1. 한쪽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법인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자 또는 혜택부인 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리고

나. 혜택부인 당사자를 제외한 어떠한 당사자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한쪽 당사자는, 비당사자의 인이 다른 당사자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자가 그 법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자 또는 그 비당사자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법인으로서 그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자는, 비당사자의 인이 다른 당사자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자가 그 비당사자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법인으로서 그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자신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법인인 그러한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태국이 그 법인이 비당사자 또는 태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된다고 입증하는 경우, 투자의 허가, 설립, 인수 및 확장과 관련한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5. 이 조의 목적상, 태국의 경우, 법인은

가.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러한 인들에 의하여 "소유"된다. 그리고

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

우, 그러한 인들에 의하여 "지배"된다.

6. 필리핀은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러한 투자자가, 달리 “안티더미법” 이라고 알려진, 대통령령 제715호에 의하여 개정된 「일정 권리, 특히 또는 특권의 국유화에 관한 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는 제목의 연방법 제 108호의 규정 및 그 개정을 위반하여 투자를 했음을 필리핀이 입증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7.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투자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혜택부인 당사자의 법과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투자를 한 경우, 그러한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10.15조

안보 예외

제17.13조(안보 예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자가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당사자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

1)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신의 의무 이행, 또는

2)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제10.16조

투자의 증진

당사자들은 투자 지역으로서의 역내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노력한다.

가. 당사자들 간 투자 장려

나. 당사자들 간 공동 투자 증진 활동 조직

다. 비즈니스 매칭 행사 홍보

라. 투자 기회 및 투자 법, 규정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브리핑과 세미나의 조직 및 조직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마. 투자 증진과 관련된 그 밖의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수행

제10.17조 투자의 촉진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노력한다.

가. 모든 형태의 투자에 필요한 환경 조성

나. 투자 신청 및 승인을 위한 절차 간소화

다. 투자 규칙, 법, 규정,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 투자 정보의 보급 증진, 그리고

라. 면허 및 허가 운영 촉진을 포함하여, 투자자에 지원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 내 접촉선, 원스톱 투자센터, 연락 창구 또는 그 밖의 실체를 설립하거나 유지

2. 제1항라호에 따른 당사자의 활동은,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도에

서, 그 밖의 당사자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의 투자활동 동안 발생한 정부 기관에 대한 불만 또는 고충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을 통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활동에 관하여 그 투자자가 제기한 불만을 접수하고, 적절한 경우, 회부를 고려하거나 적절히 고려하는 것, 그리고

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그 투자자가 경험한 어려움 해결에, 가능한 한도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되는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관련 정부 기관에 권고를 하기 위하여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투자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과 접근방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그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회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상 어떠한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거나 달리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18조

작업 프로그램

1.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입장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에 관한 논의를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내에 개시하고, 논의 결과는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가.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 해결, 그리고

나. 수용을 구성하는 과세 조치에 대한 제10.13조(수용)의 적용

2. 당사자들은 제1항에 언급된 논의를 논의 시작일부터 3년 내에 종결한다.